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4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5) 비밀준수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본 조례상의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, 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, 갱생보호 대상자로 규정함

나)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
○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심리치료, 직업훈련, 가정회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

다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

#### 3) 검토 의견

○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, 주거지원,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취업지원 등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, 재범률이 2020년에는 0.6%, 2021년 0.8%, 2022년은 1.1%로 나타났음.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사회복귀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범률, 재복역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료됨.

- 보호 선도 지원사업은 사회적 외면과 낙인, 고립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율 하락으로 인한 안전한 공동체 형성,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